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12.31.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에서 “2022년 12월 31일” 로 연장하였고,
- 안 제4조제5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0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를 “회계연도마다” 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 안 제10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 를 “10분의 2이하” 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1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기금 예탁 조항 삭제(안 제4조)
-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10조)
- 라.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안 제10조)
- 마.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안 제11조)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1명과 부위원장”을 “과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5이하”를 “2이하”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를 “「지방회계법」 제49조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u>2022년 12월 31일</u> ----- ----- ----- ----- -----.</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④ (생략) <u>⑤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u></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u>1명과 부위원장 1명</u>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 부위원장 각</u> ----- ----- ----- ----- -----.</p> <p>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다.</u> ----- -----</p>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⑥ (생략)

제9조의2(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생략)

②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보증기관 등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보증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된다.

③~⑤ (생략)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

-----.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 회계연도마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② (생략)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이하-----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회계법」 제49조를-----.